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010-422

시행일자 1996. 3.13.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14	
기획관리실장	전철		
법무 담당관			
법제계장	모		
기안	김철수		

제목 서울특별시부정·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부정·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혼령안 1부. 끝.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혼령제 833 호

1. 서울특별시부정·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혼령 제 833 호 2부. 끝.

# 서울특별시장

(제3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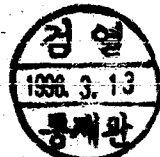
수신 보건위생과장

제목 혼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부정·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6. 3. 20.

첨부 서울특별시혼령 제 833 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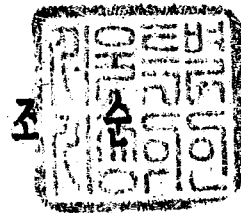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부정·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부정.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안)

## 1. 制定理由

우리시에서 '96. 3월부터 추진 예정인 위생업소의 퇴폐.변태 영업행위와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법사항에 대한 PC통신 신고 및 업서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신고보상금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직접 감시 체제를 확산하기 위함.

## 2. 主要骨子

가. 신고대상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및 식품접객업소의 퇴폐.변태 영업

### 나. 신고방법

(1) PC통신 신고 (화면 제공) : 공중정보망 HITEL 이용

(2) 신고엽서 : 자치구별로 백화점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1,580개소)

### 다. 신고 접수처리 과정

시.구접수 → 해당 시.구에 통보 →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 처리 결과 신고인 및 접수기관에 통보 → 보상금 지급(무통장입금)

라. 신고 보상금액 : 3만원~10만원

## 3. 參考事項

가. 관련근거 :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제세부운영계획"

- 보건복지 식관 65450-264(95.4.10)호와 관련 -

나. 예산조치 : '96 세출예산에 반영되었고, '96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 반영

다. 합 의 : 필요없음

### 서울특별시부정.불량식품등식품위생분야신고보상금지급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불량식품과 식품접객업소의 퇴폐.변태업에 대한 시민 신고제를 실시함에 있어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개별기준)중에서 품목정지 이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3. 명예식품감시원이 합동단속이 아닌 개인적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4.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제3조(제외대상)** ①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식품감시원, 자율지도원,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②기타 신고 또는 인지되어 행정처분 진행중이거나 처분된 업소에 대한 위반 신고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제4조(지급시기)** 신고한 사항은 관할기관에서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한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관)** ①시에 신고한 접수분은 행정처분 결과 보고에 따라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구에 신고한 접수분은 행정처분을 한 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타시·도분은 신고접수한 구에서 지급한다.

**제6조(지급보상금액)**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대상 보상금 지급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7조(지급절차)** 보상금 지급은 행정처분후 별표1에 정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구좌에 무통장입금 지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정·불량식품및퇴폐변태영업 신고대상과 보상금지급기준**

구분 번호	신고대상내용	보상금	분야별
1	영업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부정·불량식품
2	품목제조 보고를 하여야 할 식품 또는 첨가물을 보고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행위	10만원	"
3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신고)업소에서 무허가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10만원	"
4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고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	"
5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기준·규격이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
6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7만원	"
7	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한 때	5만원	"

[별표 1]

구분 번호	신고대상내용	보상금	분야별
8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검사 합격증지를 해당 용도의외의 타제품에 사용한 것	5만원	부정·불량 식품
9	제품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것 (인삼제품, 건강보존식품등 식품위생법 제14조 해당 제품)	3만원	“
10	유통기한의 표시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초과하여 표시하거나 식품공전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때	3만원	“
11	기타 위해식품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 영업정지, 행사 고발 조치되었을 경우	10만원	“
12	기타 신고한 사항중 신고자의 사기진작이나 사안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3만원	“
13	선광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비디오·음반 사용 및 공연을 하는 경우	10만원	심야적폐 변태영업
14	휴게, 일반,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10만원	“
15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7만원	“
16	지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5만원	“